

부활계약의 취지 및 법적 성격

글 이승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선임조사역



1. 머리말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약관 등에 따라 미리 정한 방법으로 다시 납입을 독촉한다.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계약해지 후에 당초의 보험계약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제도’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부활청약을 무조건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수심사 과정을 거쳐 낙부여부를 결정하므로 보험료 미납에 의한 계약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활계약의 청약을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보험계약자와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활계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인수심사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재인수 결정 여부는 보험회사의 고유한 인수심사권한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까지 인수거절이 가능하다면 ‘부활’의 의미나 제도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인수결정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유사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기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사실 관계

가. 개요

피보험자는 2009년 9월 30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4월 29일까지 교통사고상해로 통원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10년 5월 27일 비파열성 대뇌 동맥류 진단으로 같은 해 7월 12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관련한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2011년 3월 30일 마지막 계속보험료가 납부된 이후 5월 8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신청인은 약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9월 16일 동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해지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유중 대뇌 동맥류 진단은 자사 인수지침¹⁾상 인수거절대상이므로 부활청약을 승낙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해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부활을 청구하는 등 역선택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도 계약의 무효, 해지 등의 원인이 없는 한 부활청약을 승낙해야 한다면 결국 불량물건만 남게 되는 이른 바 선택적 해지의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사항

상법²⁾ 조항이나 약관³⁾에 따르면 부활청구의 승낙여부는 명시적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보험회사의 고유한 인수심사 기준에 따른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 인수거절대상이라고 하여 부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부활청구건의 인수 제한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1) 자사 인수심사기준에 따르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대뇌 동맥류, 동맥 경화증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 질환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은 인수거절체로 정하고 있음.

2)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②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0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7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해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부활계약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보험계약의 부활은 주로 인보험에서 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이고 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피보험자의 나이에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던 보험계약의 부활 제도를 1991년 개정 상법에 반영하여 명문화되었다.

부활의 법적성질은 단독행위설, 신계약설, 특수계약설로 나뉜다.⁴⁾

단독행위설은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계약의 효력이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부활권'이라는 형성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부활청약 시에도 약관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제638조의 2)을 준용토록 규정(650조의 2)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활청약과 함께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계약설은 부활을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 체결로, 부활청구는 청약으

로 보므로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활'이란 함은 해지된 종전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지 소멸한 계약에 갈음하여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부활된 계약은 종전의 계약과 법률상 별개의 것이 되므로 종전계약에 존재하는 하자를 신계약에서 원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달리 부활을 종전계약의 효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특수계약설로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즉,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본다. 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든지 아니면 부활절차를 거쳐 해지된 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속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른 해지로 보험계약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성립을 해제조건⁵⁾으로 해서 소멸한 것이므로 해지기간 중 주된 계약관계인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만 소멸하고 기타의 계약관계는 남아있으므로 부활가능기간 내의 부활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전계약이 처음부터 그 효력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약관 문언과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단독행위설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

4)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엘리움G&P), 224~236쪽

나 회사의 위험선택권이 부인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부활을 청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 고려한다면 신계약설도 타당하다고 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계약의 효력회복이라는 부활의 의미를 감안할 때 계약당사자의 의사로 계약해지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종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특수계약으로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약관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활계약의 성격을 통설인 특수계약설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의 업무처리하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이 있어야 부활이 성립하게 된다'는 이른바 신계약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 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같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도 '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소급하여 계속 보험계약이 유효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전의 계약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험계약이지만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판시(서울고법 1993. 10. 13, 93나 19452)하여 이른바 특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통설도 보험계약의 부활은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수한 계약으로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주된 계약관계인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만 소멸하고 기타의 계약관계는 잔존하므로 부활가능 기간 내의 부활이라는 해제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계약은 그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부활 청구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계약의 인수 절차와의 구분 실익이 사라져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는 결과를 초래

5)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법률행위 :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147조 2항). 성취가 불가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하게 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신계약 체결 시 내부 인수지침상 승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3. 시사점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부활청구 거절 분쟁 건은 상당부분 정리되었으나, 청약 및 승낙의제나 계약성립 등의 조항은 종전계약의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유사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은 보험사고 발생 후 부활청구건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 여부,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 대상기간, 인수기준 변경 시 처리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금번 건과 달리 보험사고가 계약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한 인수 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취지가 부활청구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기능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이후 보험사고 발생건에 대한 인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부활청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나, 미납보험료 및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계약 부활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활청

약 승낙이후에 계약해지 이전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선의의 계약자로 간주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활청약 시 과거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기간에 관해 현행 약관에는 부활의 경우에도 상법이나 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선택적 해지에 의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보험계약자는 부활청약시점에 새로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대상의 병력(예, 최근 5년)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특수계약설에 충실할 경우, 부활 시 작성하는 청약서 질문표상 고지의무의 기간적 범위는 종전계약의 승낙이후로부터 부활청약시까지의 사실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⁶⁾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알려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⁷⁾

마지막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은 보험가입금액이 축소되는 등 종전 계약의 인수기준이 변경되거나 상품판매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수계약설에 따라 종전 계약의 인수기준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판매가 중단된 경우에도 종전 상품내용대로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⁸⁾

4. 맺음말

금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부활청구의 법적 성격이 특수계약으로 규정되면서 그간 빈발했던 부활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 처리기준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경제적 곤란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많아 부활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감원에서도 약관 개정 등 근본적인 분쟁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부활제도 자체가 악용될 경우 보험금 누수로 작용하여 결국 전체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금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계기로 그간 부활제도 도입취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관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인수심사권을 행사해 온 업계의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 본고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145-5215, swonlee@fss.or.kr)

6) 유관우 · 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엘림G&P), 233쪽

7) 양승규, 보험업(삼지원, 2005) 125쪽

8) 이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부활계약 관련 분조위 결정에 따른 유사분쟁처리시 유의사항'을 업계에 통보('11. 12.9)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활청구건에 대한 인수심사) 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지 아니하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부활청구 승인 심사시 이를 이유로 인수거절하지 아니함
 - ※ 보험계약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청구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율적으로 판단함(단,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해지전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
2.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활승인건의 보험금 지급) 원칙적으로 부활청구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지 아니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그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 ※ 위 1번과 동일한 사유로 부활청구의 승인이 거절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다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활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함
3. (부활승인 심사중 보험사고 발생건의 처리) 부활청구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사고발생을 이유로 한 인수거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험료 납입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당초 약관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 및 계약 해지의 제한) 부활청구시 계약전 알릴의무의 고지대상기간은 부활청약시점을 기준으로 당초 약관 규정을 준용하되, 보험금 수령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알릴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5. (인수기준 등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또는 담보범위 등이 조정되거나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경우, 부활 청구건의 인수내용은 최초 계약체결 당시의 인수기준 및 보장내용 등을 적용함